##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용민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9492

발의연월일: 2023. 1. 16.

발 의 자:김용민·김태년·문진석

민형배 • 유정주 • 이동주

이재정 · 정태호 · 최종윤

한준호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과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,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이익을 위하여 피의자의 얼굴 등을 공개할 수 있음.

그러나 신상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진이 현재 모습과 달라 피의자를 식별할 수 없어 실효성 문제가 있음.

이에 최근 1개월 이내에 촬영된 얼굴 사진을 사용하여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의 실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(안 제8조의2제1항 단서 신설).

법률 제 호

###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피의자의 얼굴은 최근 1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으로 공개한 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의2(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)	제8조의2(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)
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	①
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	
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	
굴,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	
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.	
<u>&lt;단서 신설&gt;</u>	<u>다만,</u> 피의자의
	얼굴은 최근 1개월 이내에 촬
	영된 사진으로 공개한다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